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

201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
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6. 1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

검 토 보 고

2019. 6. 13.

수석전문위원 정 우 숙

안건명: 2018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

(기획재정국 소관)

1. 제출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(결산승인), 제129조(예비비승인) 및 제134조제1항 (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첨부 제1차정례회의 결산승인)

○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2. 결산 현황

○ 세 입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실제수납액	불납결손액	미수납액	징수율 (%)
일반회계	359,617,042	422,212,809	393,824,161	4,725,753	23,662,896	93.2

○ 세 출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년도 이 월 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지출률 (%)	불용률 (%)
일반회계	31,857,038	7,828,692	193,000	19,968	23,815,378	24.5	74.7

3. 검토의견

1) 세 입

○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을 보면

- 예 산 현 액 3,596억 1,704만 2천원
- 징수결정액 4,222억 1,280만 9천원
- 실제수납액 3,938억 2,416만 1천원
- 불납결손액 47억 2,575만 3천원
- 미 수 납 액 236억 6,289만 6천원으로

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3.2%로써 전년도(91.8%)대비 1.4% 증가함

◈ 2018, 2017회계연도 세입 비교 ◈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실제수납액	불납결손액	미수납액	징수율(%)
2018년도	359,617,042	422,212,809	393,824,161	4,725,753	23,662,896	93.2
2017년도	344,556,325	397,358,550	364,916,439	-	32,442,111	91.8

2) 세 출

○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

- 예산현액 318억 5,703만 8천원
- 지 출 액 78억 2,869만 2천원
- 이 월 액 1억 9,300만원
- 보조금 반납금 1,996만 8천원 이며,
-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38억 1,537만 8천원으로,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74.7%이며, 예비비 229억 852만 2천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2.8%임

◈ 2018, 2017회계연도 세출 비교 ◈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년도 이 월 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지출률 (%)	불용률 (%)
2018년도	31,857,038	7,828,692	193,000	19,968	23,815,378	24.5	74.7
2017년도	32,952,925	8,813,555	2,637,997	-	21,501,373	26.7	65.2

◈ 불용률 30% 이상(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) 사업현황 ◈

(단위: 천원, %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원인별				불용률
				계획변경 등	예산절감 (유보액)	집행잔액 (낙찰차액 등)	보조금 집행잔액	
합계		498,440	181,856	54,500	21,803	105,553	0	36.4
기획예산과	주요시책 기획·조정관리	76,100	28,850	24,500	2,195	2,155	0	37.9
	법규·조례 관리	32,220	17,143	0	1,521	15,622	0	53.2
	기본경비(기관공통)	200,000	67,922	0	8,500	59,422	0	33.9
공보전산과	i강서TV 운영	156,016	55,060	30,000	8,047	17,013	0	35.2
	강서영상미디어센터운영	34,104	12,881	0	1,540	11,341	0	37.7

○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30% 이상 사업 현황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기획·조정관리 사업 등 총 5건에 1억 8,185만 6천원이며 i강서TV 운영 사업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로 인해 행사·사업이 축소되어 제작 건수가 감소된 이유도 있으나, 향후 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3) 예산의 이용 · 전용

○ 예산의 이용: 없음

○ 예산의 전용: 2건 21,000천원

- 사랑의 PC 나눔 사업 관련으로 사무관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,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전용

◈ 2018년도 전용사업 ◈

(단위: 천원)

부서	사업명	예산액	전용금액		전용 승인일	전용사유
			감액	증액		
합 계		223,800	21,000	21,000		
공 보 전산과	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(사무관리비)	92,400	3,000		2018-10-10	사랑의 PC 나눔 사업 관련 전용
	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(자산및물품취득비)	21,000		3,000		
	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(사무관리비)	110,400	18,000		2018-10-10	사랑의 PC 나눔 사업 관련 전용
	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(기타보상금)			18,000		

4) 예비비 지출: 1건, 25,493천원

(단위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 잔액	예비비지출 사 유
부과과	시세·구세 부과	배상금등	25,493	25,493	0	0	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지급

○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5억 6,134만 5천원으로서 부과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금액 상환을 위한 배상금 등으로 2,549만 3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음

5) 다음연도 이월비: 3건 1억 9,300만원

○ 명시이월: 3건 193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통계목	예산 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명시이월	집행 잔액	이월사유
합 계			707,487	461,417	193,000	53,070	
기 획 예산과	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	사무관리비	87,500	32,783	30,000	24,717	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마곡지구 등 도시공간 변화 및 국·과별 대표 주요업무현황을 반영한 조감도형 관내도 제작을 위한 신규 디자인 기본 자료 기획, 발주, 계약 등 본 사업 시행이 연내에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
공 보 전산과	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	시설비	143,000	51,980	78,000	13,020	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관련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
	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	자산및 물품취득비	476,987	376,654	85,000	15,333	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관련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

-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예산과 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 3,000만원을, 공보전산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,300만원을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음

○ 사고이월: 없음

○ 계속비 이월: 없음

6) 기금결산: 없음

3. 종합의견

○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,

○ 결산안 승인의 건은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○ 2018회계연도 세입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93.2%로써, 전년도(91.8%) 보다 1.4% 증가하였으며,□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□로 구 세입이 증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있었음.

○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·세출 결산 검토 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,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,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음

○ 아울러,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,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